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39
----------	-----

2016년 2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 12. 15. 성백진 의원 발의(찬성자 10명)
2. 회부일자 : 2015. 12. 15.
3. 상정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2월 2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성백진 의원)

### 1.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 제15조에서 시·도지사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4에서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조례에서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관이나 단체의 종류를 한정하여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지정요건을 제한한 것이므로 현행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함.

## 2. 주요내용

- 동물보호센터 지정대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안 제8조제3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조례로 지정 가능 동물보호센터 대상을 제한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2 개정안의 필요성 및 주요사항 검토

-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및 피학대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별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지정하고 있음.
  -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동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sup>1)</sup>에서는 시·도지사에게는 지정 요건만을 규정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동법 제15조제9항<sup>2)</sup>에 정하고 있음에도,

1)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③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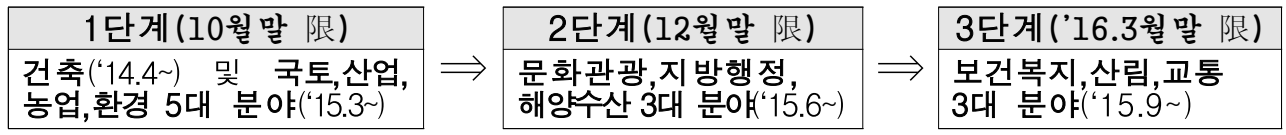
- 조례에서 기관이나 단체의 종류를 제한함으로써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의 활동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제한하여 왔음.
-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요건을 제한한 것이므로 현행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삭제>

- 이는 정부(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지방규제개혁<sup>3)</sup> 대상 조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지정 가능 동물보호센터 대상을 제한하고

3)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사업 개요

-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지방규제를 개선



있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초 시장제출로 제정된 본 조례의 해당 조항은 제정 당시 상위법의 위임이나 여타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임의로 포함시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 불합리한 조치에 해당된다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제정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⑥~⑧항 생략 >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말한다.<개정 2013.3.23>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4.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표 4의 지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 및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위탁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격리실에 보호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2) 시설의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3) 시설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설을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백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39
----------	-----

발의연월일 : 2015년 12월 15일

발 의 자 : 성백진 의원(1명)

찬 성 자 : 김광수(도봉), 조규영, 김동승,  
김용석(서초), 김기대, 장홍순,  
유 용, 김희걸, 김창원, 김태수  
의원(10명)

## 1. 제안이유

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서 시·도지사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4에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음

나. 조례에서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관이나 단체의 종류를 한정하여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지정요건을 제한한 것이므로 현행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센터 지정대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제8조제3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p> <p>① &lt;생략&gt;</p> <p>② &lt;생략&gt;</p> <p>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동물병원</p> <p>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p> <p>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p> <p>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p>	<p>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p> <p>① &lt;현행과 동일&gt;</p> <p>② &lt;현행과 동일&gt;</p> <p>③ &lt;삭제&gt;</p>